



#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Monthly Newsletter of Hanul Choongjung LLC

2018년 4월호

## Contents

### 회계정보

- 2018년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 2018년 외부감사계약 관련 유의사항

### 세무 및 법률정보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 최신 세무예규·판례

###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 /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 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 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Horwath Internation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 연락처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Memb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horwath.co.kr](mailto:secretary@crowehorwath.co.kr)  
 Website : [www.crowehorwath.co.kr](http://www.crowehorwath.co.kr)

####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2018년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신규 외감대상 회사 중 일부 중소기업이 외부감사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감사인 선임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2017년에만 130여사가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으며 그 수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실수로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 및 감사인은 감사인 선임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유의사항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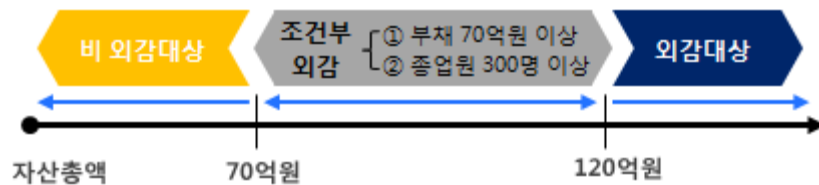
대상회사

1. 외감대상회사

외감대상 회사는 2017년 말 자산·부채·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외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일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절차를 진행하여 합니다. 금강원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외감대상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대상(외부감사법 제 2 조, 시행령 제 2 조제 1 항)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대상임
- ①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 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이 각각 70 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 ③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 억 원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300 명 이상인 주식회사



상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외부감사를 받기가 현저히 곤란한 아래 회사는 감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부감사 면제 회사(시행령 제 2 조제 2 항)

- ①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 ②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
- ③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 ④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주식회사
- ⑤ 법원에 의해 주요 자산에 대한 경매 또는 압류가 진행 중인 주식회사 등

**선임절차**
**2. 선임절차**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주주 및 금감원에 선임사실을 2주 내 보고해야 합니다.

\*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8.4.30.까지 반드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계약 준비	계약 체결	선임 보고
선임절차	① 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 ② 감사 또는 감선위 사전승인	③ 감사계약서 작성 및 날인	④ 주주에 대한 선임보고 ⑤ 금감원에 대한 선임보고
기 한	감사계약 체결 전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 주주 : 체결 즉시 * 금감원 : 계약일 2주 이내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은 반드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 요건(아래 3 개 요건 모두 해당 시)
❶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 천억 원 이상인 경우 ❷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의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경우

**주요 유의 사항**
**3.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주요 유의사항**
**(1) 선임기한**

감사인 선임기한 경과 후라도 감사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없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인 선임기한을 단 하루라도 경과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외부감사법에 따라 예외 없이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 (예시) 12월 결산법인이 2018.5.1. 감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감사인이 지정됩니다.

**(2) 적격감사인 선임**

회사는 감사인의 전문성·감사역량\* 및 독립성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서 인력·감사실적·품질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현황, 제재 여부 등 해당 회계법인의 정보 조회 가능합니다.

\*\* 독립성이 훼손된 감사인과 감사계약 체결 시 향후 감사인 교체 또는 감사인을 지정 받게 됩니다.

**(3)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이 연락두절 또는 위원들의 일정조율 문제로 대면회의 개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춰 해당위원을 재적위원에서 제외하거나 약식개최 또는 서면결의로 대체 가능합니다.

**(4) 감사인 선임보고**

회사는 감사인 선임사실을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주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감사인 선임사실의 주주에 대한 보고·통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li> <li>❷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 대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li> <li>❸ 당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공고기간 :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li> </ul>

회사는 감사계약체결일부터 2 주 이내에 금감원에 외부감사보고시스템을 통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감사인 선임보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인 선임보고 시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감사계약서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li> <li>❷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li> <li>❸ (감사인 교체 시) 감사인의 교체사유를 적은 서류 및 전기감사인 등의 의견진술이 있었다면 그 내용</li> </ul>

다만, 비상장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 및 상장법인이 3 사업연도 감사계약기간 중 2·3 차 사업연도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및 감사인의 보고의무 >**

구 분	계 약 유 형	연 도	감사인 보고의무	회사 보고의무
상장법인	초도감사, 감사인 변경	1 차 연도	○	○
		2,3 차 연도	○	×
	계속감사	1 차 연도	○	○
		2,3 차 연도	○	×
비상장법인	초도감사, 감사인 변경		○	○
	계속감사		○	×

비상장법인이 전기와 동일한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금감원에 대한 선임보고를 생략 가능하나 감사인은 계약체결보고를 해야 합니다.

**(6) 기타 유의 사항**

1) 외부감사대상회사가 기한 내에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감사인을 지정받게 되며, 이 경우 회사는 감사인 선택권을 잃게 됩니다. 또한, 지정감사인과의 계약하지 않을 경우, 외감법 위반혐의로 검찰고발 조치되며 회사의 대표이사, 감사, 회계업무 담당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전기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거절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감사인을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인을 부당하게 교체하는 것으로 보아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됩니다. 단, 회사가 전기감사인의 감사인 변경동의서를 첨부하여 외부감사인 선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교체로 보지 않습니다.

**2018년 외부감사 계약 관련 유의 사항**
**2018년도 계약관련  
유의 사항**

2017년에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 자본시장법 개정법률, 공인회계사법 개정법률, 국세기본법 개정법률 등 회계개혁관련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2018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계약과 관련하여 감사인과 회사가 유의하여야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감사시간**
**1. 표준감사시간의 준수**

외감법 대상의 모든 회사와 감사인은 2018년 11월 1일(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8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부터 표준감사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투입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하는 등 회계성실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국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며, 표준감사시간 미달 정도에 따라 감사인 지정대상에 포함됩니다.

한공회는 금융감독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고, 3년마다 감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 반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한공회에서 공개초안 형태로 제시할 예정인 표준감사시간을 토대로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표준감사시간이 확정될 경우 감사시간을 최종적으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2018년 사업연도 감사계약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책임**
**2. 손해배상 책임 제척 기간의 연장 등**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 제척 기간이 현행 3년에서 8년으로 대폭 연장되고, 감사보고서에 대한 과징금을 감사보수의 최대 4배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제도가 신설되는 등 2018년 1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부터 감사인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사인은 2018년 사업연도 감사계약 시 반드시 강화된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감사시간 및 보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2018년 사업연도 재무제표부터 회계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고, 분식회계가 적발된 경우 회사는 물론 분식회계와 관련된 임원과 회계담당자에게까지도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고려**
**3.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외부감사 실시 내용 등의 고려**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8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부터 감사투입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성실도 분석 고려요소에 포함되며, 한공회는 감사투입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하는 등 회계성실도에 문제가 있는 회사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  
연기 제도****4.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제출 연기 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제출 연기 제도는 2017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감사의견 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감사증거가 부족할 경우 “감사의견 거절”을 표명해야 하나 그 전 단계로서 5영업일 이내에서 감독당국에 요청하고 1회에 한하여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가 연기됨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이 연기되는 것입니다.

**재무제표 대리 작성  
금지****5. 감사인의 회사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사항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금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작성이나 회계처리 자문을 요청할 경우 감사인 지정대상에 포함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요구사항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감사인의 경우에도 재무제표 작성이나 회계처리 자문 요청에 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종속회사  
비감사업무 금지****6. 지배회사의 감사인이 종속회사에 제공하는 비감사업무 금지**

감사대상 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인 경우 그 종속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 수행이 금지됩니다. 해당 비감사업무는 공인회계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 금지 범위도 일부 확대되었으며, 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수목적 자산 등 실사·가치평가
-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중개 등

해당 규정은 2018년 5월 1일 시행이므로 이를 반드시 고려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비감사업무의 종결시기도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01

**세무 및 법률정보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 후속조치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 후속조치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기획재정부는 2018. 4.17(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 후속 조치로서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4.18~5.28.) 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6월말 공표·시행될 예정입니다.

**1.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납기연장 기간 확대(국기령 §2의3 신설)**

구조조정, 공장폐쇄결정 등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되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 납기연장을 현행 최대 9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산세 등의 부담이 완화되어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 행	개 정
※ 현행 납기 연장 규정 (§2의2)  ○ 납세자가 ① 재해·도난, ② 질병, ③ 사업상 심각한 손해 또는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  -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최초 3개월 이내 + 1개월 범위)	□ 납기연장 기간 특례 신설  ○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 ①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 ②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③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 ** 조특령§2에 따른 중소기업  - ① 재해·도난, ② 질병, ③ 사업상 심각한 손해 또는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  ○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세(이에 관련된 농특세 등 포함)관련 납기를 최대 2년 연장  - 최초6개월 이내 + 3개월씩 연장



**2.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징수유예 · 체납처분 유예기간 확대(국정령 §22②, § 82의2①)**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징수유예  <input type="radio"/> 납세자가 ① 재해·도난, ② 질병, ③ 사업상 심각한 손해 또는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  - 납세고지 등을 최대 9개월까지 유 예	<input type="checkbox"/> 징수유예 기간 특례 신설  <input type="radio"/>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이  * ①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 ②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③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 ** 조특령§2에 따른 중소기업  - ① 재해·도난, ② 질병, ③ 사업상 심각한 손해 또는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  <input type="radio"/>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세(이에 관련된 농특세 등 포함)관련 납 세고지 등을 최대 2년까지 유예
<input type="checkbox"/> 체납처분유예  <input type="radio"/> 체납자가 일정요건* 충족시 재산 압 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최대 1년까지 유예  * ① 성실납세자, ② 압류·매각 등의 유예로 정상적 사업운영을 통해 징수가 가능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체납처분유예 기간 특례 신설  <input type="radio"/>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체납처분유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위기지역, 중소기업에 관한 요건은 징수유예 특례와 동일  -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최 대 2년까지 유예

최신 세무예규  
판례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기업이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 유예기간 계속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4, 2018.04.0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어 2015.2.3.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은 유예기간 중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지급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중5217, 2018.03.16)
  -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쟁점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지급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주식발행 법인이 100%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세무처리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66, 2018.03.16.)
  - 주식발행법인이 결손금 보전을 위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보통주 발행주식 전량에 대하여 무상감자를 실시한 후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그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업 무 소 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li> <li>▪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li> <li>▪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li> <li>▪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li> <li>▪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li> <li>▪ 조직, 인사 전략 / HR</li> <li>▪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li> <li>▪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li> <li>▪ M&amp;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li> <li>▪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li> <li>▪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li> <li>▪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li> <li>▪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li> <li>▪ PI / CRM / Risk Management 등</li> </ul> |
|--|---|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horwath.co.kr](mailto:secretary@crowehorwath.co.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 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Choongjung LLC is a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 Swiss association. Each member firm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Choongjung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member.*